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. 10. 2 선고 2018가단75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9. 18.

판결 선고 2018. 10. 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지상 일반목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단독주택 99.84m²에 관하여 2018. 5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2018. 5. 10.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미등기 건물을 3,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,

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2018. 5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하종민